

日帝下 小作制의 效率性 檢討*

禹 大 亨**

〈目 次〉

- I. 머리말
- II. 소작제의 효율성을 둘러싼 두가지 가설
- III. 실증적 검토
 - 1. 자료
 - 2. 「미곡생산비조사」의 추정결과
 - 3. 『농가경제개황조사』의 추정결과
- IV. 맺음말

I. 머리말

일찌기 아담 스미드는 소작제에 관해 언급하면서, 定率小作制(sharcropping)은 定額小作制(fixed-rent contract)에 비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定額小作制에 곧 자리를 내어줄 것이라 예측한 바 있다.¹⁾ 그러나 그 후의 역사는 그의 예측과 달리 정율소작제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재 까지 많은 나라에서 가장 지배적인 방식으로 존속해왔다(Stiglitz, 1988).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되었다. 정율소작제는 농업의 다른 계약방식, 즉 정액소작제와 自作制(own farming)에 비해 실제로 비효율적인가.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정율소작제가 오랫동안 지배적으로 존속

* 본고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日帝下「改良農法」의 普及과 農村構造의 變化』, 제4장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논문작성을 지도해주신 윤석범, 최호진, 윤기중, 정창영, 홍성찬 교수님과 익명의 심사위원의 논평에 감사드립니다.

** 연세대 강사.

1) 아담 스미드, 『국부론』, 제3편 2장 「로마제국 몰락이후 유럽의 古代상태에서의 농업의 沮害」. 아담 스미드를 포함하여 소작제에 관한 고전학파의 견해에 대해서는 각주 6)을 보라.

해왔다는 것은 비효율성을 능가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소작제의 존속배경과 그 성과를 둘러싼 이러한 의문들은 Cheung(1968, 1969)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된 이후, 토지계약제도가 주-대리인모형(principal-agency model)의 한 전형으로 간주되면서 경제사학자뿐 아니라 이론경제학자들에 의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²⁾ 그러나 활발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치된 결론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Eswaran and Kotwal, 1985). 이는 Quibria and Rashid(1986, p. 94)가 지적한 바와 같이 소작제를 둘러싼 지리적·경제적 환경이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란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소작제에 관한 성급한 일반이론의 구축보다는 다양한 지역에서의 많은 실증결과가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地主小作制의 역사는 오래되며,³⁾ 특히 「농지개혁」이전 日帝強占期는 小作制가 가장 번창한 시기였다. 당시 전 경지의 1/2 이상이 소작되었으며, 자소작농을 포함한 소작관련 농가는 전 농가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소작방식을 정율제와 정액제로 나누어 보면 1930년대초 현재답의 경우에는 정율제방식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⁴⁾ 이에 따라 토지계약방식중에서 (정율)소작제가 선택된 이유가 무엇이며, 실제 소작제는 과연 비효율적이었는가 하는 문제는 일제하 農業史研究뿐만 아니라 比較史的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과제가 아닐 수 없다. 本稿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일제 강점기를 대상으로 小作制의 效率性 여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⁵⁾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제2절에서는 소작제의 效率性을 둘러싼 양 假說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제3절에서는 이러한

2) 이에 따라 소작제에 관한 서베이논문도 적지 않은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Binswanger and Rorenzweig(1981), Quibria and Rashid(1984), Otsuka and Hayami(1988) 등이 있다.

3) 우리나라 소작제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허종호(1965, pp.11-86), 朝鮮總督府, 『朝鮮ノ小作慣行』(上), 1932, pp. 123-133을 참조.

4) 朝鮮總督府, 같은 책, p.117.

5) 즉 本稿는 소작제를 둘러싼 두가지 쟁점-소작제의 선택배경과 소작제의 효율성여부-중에서 後者의 문제에 국한한다. 前者の 문제에 대해서는 禹大亨(1994, 제3장 3절)을 참조.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일제하 소작제의 효율성여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며, 제4절은 맷음말로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략히 요약한다.

II. 소작제의 효율성을 둘러싼 두가지 가설

小作制의 效率性에 대해서는 두가지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하나는 定率小作制하에서는 定額小作制와 自作制에 비해 요소가 過小投入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란 주장으로서, '고전적 가설' 혹은 '전통적 가설'로 불리우고 있다.⁶⁾ 나머지 하나는 市場에서의 競爭과 지주의 소득극대화 노력은 要素投入의 수준을 토지계약의 방식과 관계없이 같게 해주며, 따라서 정율소작제는 자작제나 정액소작제에 비해 결코 비효율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가설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Cheung의 이름을 따라 'Cheung의 가설'로 불리워지고 있다.⁷⁾

양 견해는 이처럼 서로 다른 결론을 바탕으로 상반된 정책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前者는 地代率 인하나 정율소작제의 폐지, 그리고 耕者有田의 원칙에 입각한 土地改革의 실시 등은 소득분배의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生產力의 증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보고 있다.⁸⁾ 이에 반해 後者는 정율소작제가 결코 농업발전의 장애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대율의 인하나 小作制廢止 등의 인위적인 토지개혁은 농업발전에 본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⁹⁾

그러면 양 견해의 이론적 근거는 무엇일까. 먼저 前者에 대해서는 마샬리언 다이아그램으로 불리는 <그림 1>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 간편하다.¹⁰⁾ 단

6) 소작제에 관한 고전학파 경제학자의 견해에 대해서는 Binswanger and Rorenzweig (1981, pp. 22–23), Byres(1983), Pearce(1983), Quibria and Rashid (1984, pp. 103–104)에 잘 정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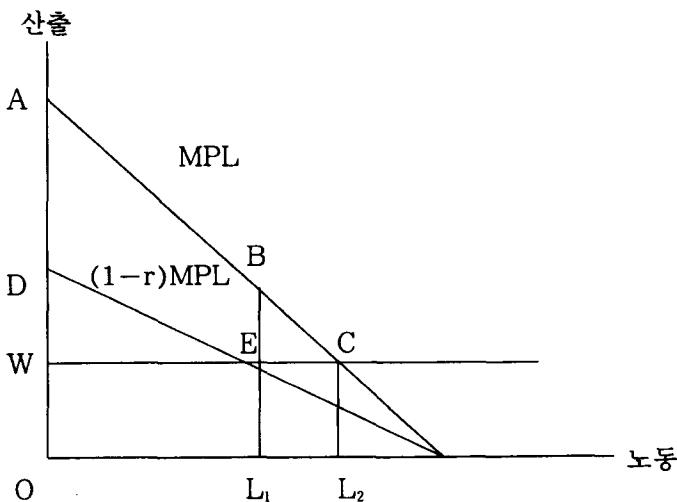
7)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Cheung(1968, 1969), Hsiao(1975), Reid(1977), Otsuka and Hayami (1988)을 보라.

8) 소작제 논의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는 Berry and Cline(1979, p. 76), '전통적 가설'에 입각해 토지개혁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견해로는 Koo(1973)을 보라.

9) 이 가설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는 Hsiao(1975, p. 1030), Lehmann(1986, p. 334)을 보라. 이러한 논의에 입각하여 토지개혁의 실시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로는 Huang (1975) 참조.

10) 마샬리언의 다이아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Cheung(1968), Hsiao(1975), Reid (1977), Otsuka and Hayami(1988)을 보라.

순화를 위해 '확실성의 세계'를 가정하고 거래비용은 어느 계약이나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또한 논의의 편의상 요소 투입은 勞動 한 요소로 국한하고 현재 노임은 W , 노동의 한계생산성과 지대율을 각각 MPL 과 r 이라고 하자. 따라서 $(1-r)MPL$ 은 정율소작농(share tenant)의 한계수입곡선이 된다.



〈그림1〉 마샬리언 다이아그램

먼저 자작농과 정액제 하에서의 소작농은 $MPL=W$ 인 L_2 까지 노동을 투입할 것이다. 이에 따라 총 산출량은 $OACL_2$, 지주와 소작농의 수입은 각각 WAC , $OWCL_2$ 가 된다. 다음으로 정율소작농은 자신의 한계수입곡선 $(1-r)MPL$ 과 W 가 일치하는 L_1 까지 노동을 투입할 것이다. 그 결과 산출량은 $OABL_1$, 지주와 소작농의 소득은 각각 $DABE$, $ODEL_1$ 이 된다. 즉 이를 자작제 및 정액소작제와 비교하면, 노동투입과 총 산출량은 각각 (L_2-L_1) 과 L_1BCL_2 만큼 작으며 사회 전체적으로는 EBC 만큼의 후생손실(welfare loss)이 발생한다. 以上이 고전학파가 주장하는 定率小作制의 非效率性에 대한 이론적 근거이다. 논의의 편의상 勞動 한 요소에 국한하였지만, 다른 투입 요소 예컨대 肥料나 資本의 투하에서도 마찬가지의 설명이 적용된다.

한편 Cheung의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고전학파의 주장을 소작농의 관점에서만 바라본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근거는 다

음과 같다. 전통적 가설이 주장하는 균형점 E하에서는 定率制에서의 지주수입(DABE)이 定額制나 自作制에서의 지주수입(WAC)보다 항상 작게 된다. 즉 정율소작제를 선택한 지주는 항상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통적 가설은 지주가 자신의 소득을 희생하여 소작농을 도와주는 利他主義者거나 아니면 이윤극대화에 관심이 없는 경우에만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¹¹⁾ 그러면 지주의 적정화를 '정당하게' 고려할 때 노동 투입은 어디에서 결정될까. Cheung의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지주는 소작농에게 기회비용¹²⁾만큼 보장해 주는 한도 내에서 노동투입을 최대로 강제할 수 있는데 그 점이 바로 L2가 된다는 것이다.¹³⁾ 그런데 이 점은 정액제나 자작제 하에서의 적정 투입점과 같기 때문에 결국 요소투입의 수준과 토지생산성은 정액소작제와 자작제, 그리고 정율소작제 모두 동일하게 된다.

이상 양 가설을 살펴보면서 알 수 있듯이, 전통적 가설하에서는 지주의 적정화문제가 도외시되었다는 Chung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확실성의 세계'라는 비현실적인 가정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¹⁴⁾ 다시 말하면 '불확실성의 세계'를 상정할 때도 Cheung의 가설이 여전히 설득력이 있을 것인지는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전통적 가설의 反論은 바로 이 점에서 출발한다.

전통적 가설의 의의는 정율소작제하에서는 정액소작제와 자작제와 달리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의 문제가 있으며, 이를 원천적으로 피할 수 없음을 지적한데 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앞의 〈그림 1〉로 설명하면 정율소작농은 그가 이윤을 추구하는 한, 지주의 희망 투입점 L2와 상관없이 가능한 한 L1까지만 노동을 투입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주의 입장에서 불 때 이것은 소작농의 노동을 L2까지 강제하기 위해서 소작노동을 끊임없이

11) 따라서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림1〉의 E점은 안정적인 균형상태가 될 수 없으며 〈그림 1〉은 지주의 적정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소작농의 적정화만 고려한 일면적인 그림에 불과하다.

12) 기회비용은 소작농이 정율제 대신 정액제나 임노동을 택할 때 받는 수입(alternative earnings)을 말한다.

13) 이에 대한 수학적 증명은 Cheung(1968, pp.1113–1114), Qubria and Rashid(1984, pp. 105–106), Otsuka and Hayami(1988, pp. 36–37)을 보라.

14) 뿐만 아니라 지주가 소작지에 대해 자신의 물적, 인적 자본을 투하하는 경우도 논의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또한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적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전자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감독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확실성의 세계’가 아닌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지주가 아무런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소작농의 노동을 완벽하게 감독할 수 있을까.¹⁵⁾ 즉 ‘불확실성의 세계’하에서 산출의 감소가 있을 경우, 그것이 소작농의怠業(shirking) 때문이지 아니면 흉년 때문인지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을까.¹⁶⁾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소작농의 노동투입 수준은 지주의 ‘선택 변수’라기보다는 소작농의 ‘선택 변수’로 보는 것이 보다 현실에 맞는 가정이란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전통적 가설을 지지하는 주장의 핵심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Cheung의 가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다시 다음과 같이 再反論을 폈다고 있다. 이들은 먼저 비록 ‘불확실성의 세계’라 하더라도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지주가 소작농의怠業 여부를 체크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날씨와 산출의 관계에 대해 많은情報가 축적되어 있는 경우,¹⁸⁾ (2) 한 지주가 여러 소작농과 동시에 소작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¹⁹⁾ (3) 자신의 소작지 부근에 있는 다른 토지의 산출물과 쉽게 비교가 가능한 경우.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 충족된다면 산출의 감소가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소작농의怠業 때문인지를 가리는데 그다지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지주가 정기적인 소작 再契約을 통해 불성실한 소작농의 소작권을 박탈할 수 있다면怠業은 그리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²⁰⁾ 소작농의 잠재적失業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가운데怠業으로 인한 소작권 박탈은 소작농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특히 작은 농촌마을에서 소작농에 대한 나쁜‘평판’은 주민들에게 쉽게 알려지기 때문에 다른 지주와 새로운 계약을 맺기도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소작농은 비록怠業이 자신에게 유리하다 하더라도 소작권의 박탈이 두려워 이를 쉽게 행하지 못

15)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는 Quibria and Rashid(1984, p.104), Berry and Cline (1979, pp. 25–26)을 참조.

1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Kotwal(1985), Otsuka and Hayami(1988)을 보라.

17) Bardhan and Srinivasan(1971, pp. 52–53).

18)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Fama(1980), Lambert(1983)을 보라.

19)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Holmstrom(1982), Mookherjee(1984)을 보라.

20) 同等한 效率性을 유지하는 비결로서 短期的인 小作 再契約이 효과적이라고 보는 견해로는 Johnson(1950, pp. 118–119), Reid(1977, pp. 558–561), Otsuka, Kikuchi and Hayami.(1986, pp. 291–294), Taslim(1989, pp. 247–248) 등이 있다.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지주는 소작방식을 선택할 때, 자신이 얼마나 소작노동을 효과적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다.²¹⁾ 가령 지주가 효과적으로 소작노동을 감독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는 정율제 대신 정액제를 선택한다는 것이다.²²⁾ 따라서 事後적으로 정율제가 선택되었다면 그 곳은 지주가 소작노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모니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선택하였다는 것이다.²³⁾

요컨대 Cheung의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상의 세가지 조건 중에서 적어도 어느 한가지 이상만 잘 기능하고 있으면 정율소작제하에서의 과소투입은 큰 문제가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양 견해는 정율제의 효율성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정율제의 효율성의 여부는 지주의 모니터 능력에 달려 있다고 보는 점에서는 견해가 일치한다. 다만 고전적 가설은 소작노동에 대해 지주의 완벽한 강제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Cheung의 가설은 직·간접적인 다양한 수단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점에서 다르다. 그런데 이 문제는 Shaban(1988, p. 894)이 적절히 지적하였듯이, 理論적인 문제가 아니라 實證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주의 직·간접적인 모니터 능력이란 것은 개별 지주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편차가 있으며, 또한 Otsuka and Hayami(1988, pp. 55–56)도 인정하고 있듯이 그것이 늘 완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작제의 효율성에 관한 실증연구가 다양한 지역에 걸쳐 방대하게 제출되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그런데 Bell(1977)

21)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는 Otsuka, Kikuchi and Hayami(1986), Otsuka and Hayami (1988), Morooka and Hayami(1989) 등을 참조.

22) 예컨대 정율제가 在村地主나 친인척 등 믿음과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주로 맡겨지며, 반면에 不在지주들이 定額制를 선호하는 것은 그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Otsuka and Hayami(1988, p. 293)을 보라.

23) 다음과 같은 주장은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람들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자신의 이익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에 서서 계약을 선택할 만큼 충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Otsuka, Kikuchi and Hayami, 1986, p. 295).

24) 실증연구의 구체적인 문헌은 Otsuka and Hayami(1988) 각주 47)에 잘 정리되어 있다.

과 Shaban(1986)을 제외한 대부분의 실증결과가 Cheung의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²⁵⁾ 이것은 앞서 살펴본 Otsuka류의 주장, 즉 정율제는 계약이행의 메커니즘이 잘 발휘되는 곳에서만 선택된다는 주장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최근 이들은 전통적 가설을 지지하는 일부 연구도 엄밀하게 보면 定率小作制의 비효율성을 보여준 사례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⁶⁾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전통적 가설을 지지하는 이들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지역은 지주가 소작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制度的 制約’(institutional constraints)이 있는 곳이라 한다.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는 지주들이 소작 노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定額小作制를 선택하고 싶어도 부득이 定率小作制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²⁷⁾ 따라서 정율제가 비효율적으로 나타난 이들 지역의 실증결과들도 엄밀히 말해 정율제의 비효율성 일반을 보여주는 증거라기보다는 ‘제도적 제약’하에서는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들은 지주가 소작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제도적 제약’만 없다면 소작제의 비효율성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을 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定率制에는 定額制나 自作制에 없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징이 있음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지주가 정율제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기피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주 자신이 투하한 인적·물적 자본의 성과를 흡수하기 위해 선택되기도 한다.²⁸⁾ 즉 정율제가 비록 정액제나 자작제에 비해 과소투입의 가능성성이 있다 하더라도 정율제에는 이들 방식에는 없는, 지주의 소작농 양쪽의 인적, 물적 요소가 모두 투입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과소투입에 따른 負의 효과보다도 통합(pooling)에 따르는 正의 효과가 더 크다면, 정율소작지는 정액소작지나

25) Otsuka와 Hayami(1988, pp. 49–52)는 기존의 실증연구들을 토대로, 소작제의 효율성 여부를 다시 테스트하였는데 그들의 검증결과에 따르면 소작제와 자작제간에는 유의미한 생산성 격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이하의 논의에 대해서는 Otsuka, Chuma and Hayami(1991, pp. 2007–2008) 참조.

27) 그 이유는 이들 지역이 소작제가 불법인 지역으로서, 지주의 간섭이 덜한 정액제를 택할 경우, 토지를 소작농에게 빼았길지 모른다는 우려때문이라 한다.

28) 이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Eswaran and Kotwal(1985)을 보라.

심지어 자작지보다 생산성이 높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²⁹⁾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을 시사해준다. 정율소작제가 정액소작제나 자작제와 같이 事後的으로 동등한 생산성을 유지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지주가 소작노동을 효과적으로 감독한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한 소작제의 효율성여부를 검토할 때는 지주가 자신의 인적·물적 자본을 소작농의 그것과 더불어 생산과정에 참여시키는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지주의 경영참여 가능성에 따라 경영적 지주와 전통적 지주, 재촌지주와 부재지주 등으로 유형화하는 시도는 소작제의 선택을 설명할 때 뿐만 아니라³⁰⁾ 소작제의 효율성 검토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II. 실증적 검토

1. 資 料

日帝下 시기를 대상으로 이상의 가설을 검토하는데 이용된 자료는 1926년도 「米穀生產費調查」(이하 「조사」)³¹⁾와 朝鮮總督府 農林局 農村振興課, 『農家經濟概況調查 昭和8年—昭和13年(小作農部)』, 1940(이하 『개황조사』)이다. 「조사」는 제목 그대로 전국에 걸쳐 자작농과 소작농, 그리고 지주 각 40농가를 선정하여 이들의 米生產費 내역을 조사한 것이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자작과 소작을 구분하여 段步當 收穫高와 비료, 노동, 고정자본 투입량 등이 조사되어 있어서 소작제의 효율성을 둘러싼 양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특히 「조사」는 서구의 실증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첫째 이 자료에는 각 소작농가별로 小作料率을 알 수 있어 소작료율의 高

29) 소작지의 생산성이 자작지보다 높게 나타난 사례에 대해서는 Berry and Cline (1979, pp. 74–78)을 보라.

30) 소작제의 선택모형에서 지주의 인적·물적 자본의 참여 여부를 고려하여 지주를 경영적 지주와 부재지주 등으로 유형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Eswaran and Kotwal (1985)이 있다.

31) 「조사」는 朝鮮總督府, 『朝鮮の小作慣習』, 1928, pp. 45–56에 수록되어 있다.

低가 小作地의 投入과 產出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³²⁾

둘째 일반적으로 自作地와 小作地의 生產性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 t검정법이다.³³⁾ 그런데 이 방법은 Taslim(1989)의 지적대로 자작농과 소작농간에 경작지의 質, 경작규모 등이 다를 경우, 생산성의 차이가 순수하게 소유 형태의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토지의 질이나 경작규모의 차이 때문인지를 가려내기가 힘들다.³⁴⁾ 가령 자작지의 質이 소작지의 그것보다 월등할 경우, 비록 자작지가 소작지에 비해 우월한 생산성이 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작지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우수한 토지의 질 때문인지를 알 수 없다³⁵⁾. 그런데 「조사」에는 각 토지마다 地價, 경작규모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통해 이러한 오류를 피할 수 있다.³⁶⁾

셋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구의 대부분 실증연구는 인적·물적 자본의 참여여부에 따라 지주를 구분하지 않고 小作地와 自作地만을 단순 비교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런데 「조사」에는 소작농과 각 소작농에 대응되는 지주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 이를 대조하면 小作地가 在村地主의 것인지 아니면 不在地主의 것인지를 구별해낼 수가 있다.³⁷⁾ 이를 이용하면 지주유형 별로 소작제의 효율성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개황조사』에는 비료와 노동 등 물적 투입요소와 관련된 통계가 없으며 自作農에 관한 조사가 없다는 점, 또한 농가 단위의 데이터가 아니라 각 지역별로 합산한 데이터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다. 먼저 米作뿐 아니라 田作의 지대율을 알 수

32) 「조사」에는 개별 소작농(지)의 수확고와 소작료율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조사」에 나타나 있는 소작농과 지주의 주소를 세밀히 관찰하면, 소작농과 지주는 일대일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작농의 小作米 취득분을 그 소작농에 대응되는 지주의 소작료와 합하여 그 소작지의 수확고를 구할 수 있으며, 지주의 소작료를 수확고로 나누면 소작료율을 구할 수 있다.

33) 소작지의 효율성을 검정한 서구의 대부분의 실증결과는 이러한 t검정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Otsuka and Hayami(1988, pp. 49–50).

34) 양 대립가설을 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Taslim(1989, pp. 234–235).

35) 마찬가지로 경작규모와 토지생산성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잘못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36) 자작지와 소작지간의 생산성을 비교한 실증연구 중에서 회귀방정식을 이용한 것으로는 Roumasset(1976), Truran and Fox(1979)가 있다.

37) 재촌지주와 부재지주의 구별은, 소작농의 주소와 지주의 주소가 같은 郡 같은 面에 속하는 경우에는 在村地主, 郡은 같아도 面이 다를 경우 不在地主로 간주하였다.

있어 田作의 경우 지대율과 토지 생산성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둘째 『개황조사』에는 ‘諺文이상 解讀者’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人的 資本의 대변수로 볼 경우 인적 자본이 토지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각 지역의 定租法의 비율을 이용하면 정액소작제와 정율소작제간에 실제 생산성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미곡생산비조사」의 추정결과

그러면 먼저 「조사」를 토대로 要素投入과 土地生產性은 소작료율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분석방법은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였으며 추정에 이용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L &= a + b \log A + c \log PL + d RATE + e DAB \\ FE &= a + b \log A + c \log PL + d RATE + e DAB \\ FK &= a + b \log A + c \log PL + d RATE + e DAB \\ Q &= a + b \log A + c \log PL + d RATE + e DAB \end{aligned}$$

L =段當 노동투입(円), FE =단당 비료비(円), FK =단당 고정자본(농구비+農舍비), Q =단당 수확고(石), A =답면적(정보), PL =지가(円), $RATE$ =소작료율(=소작료/생산고), DAB =지주의 재촌유무를 나타내는 가변수(재촌지주=1, 부재지주=0).

위 식에서 보듯이 피설명변수에는 노동과 비료 고정자본 등 投入과 產出을, 설명변수에는 소작료율(RATE)외에 경작규모(A), 토지의 질(PL), 지주의 在村有無를 나타내는 가변수(DAB)를 포함시켰다. 추정 결과는 〈표 1〉에 정리하였다. 먼저 $\log A$ 부호를 보면, 固定資本만 (+)이나 勞動을 제외하고 모두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작규모와 토지생산성간에도 유의미한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³⁸⁾ 다음으로 소작료율(RATE)의 부호

38) 경작규모와 토지생산성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소작제만큼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주제이다. 양자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실증적인 논의에 대해서는 Berry and Cline (1979)을 보라. 일제하 兩者の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는 禹大亨(1994, 제2장)을 참조.

를 보면 투입과 산출 모두 (−)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또한 1%에서 5% 사이에 들어 있다. 이것은 요소투입의 결정이 지주가 아닌 소작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말하면 지주가 소작농의 요소투입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끝으로 DAB의 경우, 노동 비료 고정자본 등 요소투입은 비유의적이나 토지생산성은 5% 유의수준에서 (+)를 나타내고 있다. 즉 재촌지주와 부재지주간에 요소투입량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산출은 재촌지주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흥미로운 결과로서 약간의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표 1) 추정결과 : 소작료율과 投入, 產出(小作農)

종속변수	상수	log A	log PL	RATE	DAB	R ²
노동	5.33*	-0.96**	6.52*	-21.0*	0.11	-0.59
	(1.77)	(-2.04)	(6.51)	(-4.17)	(0.15)	
비료	8.93**	-0.20	4.78*	-29.70*	-0.66	0.44
	(2.37)	(-0.34)	(3.66)	(-4.70)	(-0.71)	
고정자본	1.04	0.01	0.48**	-2.51**	-0.18	0.20
	(1.63)	(0.10)	(2.16)	(-2.36)	(-1.14)	
토지생산성	1.66*	-0.09	0.89*	-3.10*	0.28**	0.44
	(2.93)	(-1.00)	(5.23)	(-3.18)	(2.02)	

자료 : 朝鮮總督府, 「朝鮮の小作慣習」, 1928, pp.45-56.

주: 1. *는 유의수준 1%,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0%

2. ()는 t통계량

3. R²는 조정된 R²

4. 조사농가수=40.

먼저 이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가설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在村地主만 金肥, 農具 등 물적 자본을 제공하고 이것 때문에 재촌지주의 토지생산성이 부재지주의 그것보다 높았을 가능성이다.³⁹⁾ 그런데 「조사」에는 지주의 生產費 항목이 기재되어 있어 이것의 사실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비료를 대부하는 地主는 1名에 불과하며 그 지주는 소작농과 같은 面에 살지 않은 不在地主였다. 따라서 재촌지주만이 물적 자본을 제공하고 이것 때문에 부재재주보다 높은 생산성을 실

39)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不在地主는 소작농에게 물적자본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반면 在村地主만 이를 제공하여 在村地主 小作地의 토지생산성이 不在地主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을 말한다.

현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해도 좋을 것이다.

나머지 하나의 가능성은 在村地主가 자신의 ‘경영적 요소’(managerial input)⁴⁰⁾(=인적 자본)을 생산과정에 투입하고 이것으로 인해 부재지주의 생산성보다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즉 물적 자본의 투입량에서 양자간에 차이가 없다면 결국 생산성의 차이는 인적자본 투입의 차이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다.⁴¹⁾ 위 추정결과를 자세히 보면 노동을 제외하고⁴²⁾ DAB의 부호가 모두 (−)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재촌지주의 높은 생산성이 적어도 재촌지주의 소작지에 보다 많은 물적 자본이 투입되었기 때문은 아님을 시사해준다. 그렇다면 재촌지주의 높은 생산성은 물적자본이 아니면서 재촌지주가 부재지주에 대해 비교 우위가 있는 투입 요소, 즉 ‘인적 자본’이 재촌지주의 소작지에 보다 많이 투입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⁴³⁾ 물론 不在地主라 하더라도 자신의 인적자본의 투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거리적인 제약과 농사경영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在村地主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부재지주들이 정액제를 선호하는 반면 재촌지주들은 정율제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⁴⁴⁾ 부재지주에 이른바 ‘靜態的 地主’가 많은 대신 재촌지주에 ‘動態的 地主’가 많다는 사실에서 쉽게 예상할 수 있다.⁴⁵⁾

40) ‘경영적 요소’에는 농사 경영 전반에 걸친 지시, 관리, 適期 適所의 요소투입, 그리고 품종 및 비료의 종류 및 적정량의 결정 등을 포함한다.

41) 일제는 한국을 강점한 후 조선 전래의 在來農法을 해체시키고 일본식 농법인 이른바 改良農法을 이식·보급시키는데 힘을 기울였다. 그런데 개량농법은 재래농법과 달리 ‘근대적 투입요소’의 의존율이 높으며 또한 기술 개발 자체가 외부기관에서 이루어져 농민에게 하향식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농사 정보와 신농법을 익히는데 따르는 ‘학습과정’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즉 재래농법과 달리, 개량농법하에서는 인적자본이 토지생산 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인적자본과 개량농법간에, 그리고 인적자본과 토지생산간에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 실증연구에 대해서는 Feder and Zilberman(1985, pp. 275–277)을 보라. 일제하의 경우 이에 관한 구체적인 검증은 뒤에서 다시 검토될 것이다. 재래농법과 대비되는 개량농법의 기술적 특징과 보급추이에 대해서는 禹大亨(1994, 제1, 2장)을 보라.

42) 노동의 경우 부호는 (+)이나 신뢰수준은 매우 낮다.

43) 在村地主 소작농의 人的資本이 不在地主 소작농의 그것보다 우월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그러나 지주의 재촌유무에 따라 소작농의 인적자본에 차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이다.

44) 부재지주는 정액제를, 재촌지주는 정율제를 선호하고 있음을 禹大亨(1994, pp.126–130)을 보라.

45) 잘 알려진바와 같이, 久間健一 등 당시 식민지 관학자들은 일제하 地主를 두가지 유형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어디까지나 추론에 불과하며 앞으로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自作地와 小作地간에 投入과 產出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분석의 방법은 아래에서 보듯이 자작농과 소작농을 통합한 다음, 자작과 소작을 가변수로 구분한 회귀방정식을 이용하였다. 추정결과는 〈표 2〉에 정리하였다.

$$L = a + b DRE + c \log A + d \log PL + e DTE$$

$$FE = a + b DRE + c \log A + d \log PL + e DTE$$

$$FK = a + b DRE + c \log A + d \log PL + e DTE$$

$$Q = a + b DRE + c \log A + d \log PL + e DTE$$

DRE=지역 가변수(남한=1,북한=0), DTE= 자작·소작을 구별하는 가변수(자작=1, 소작=0), 나머지는 앞에서 정의한 것과 같음.

으로 구분하였다. 그중 하나가 소위 '靜態的 地主'로서, 농업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매년 주어진 소작료를 소비만 하는 지주이며, 나머지 하나는 '動態的 地主'로서 농업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산력 증대에 힘쓰는 지주이다. 久間健一은 전자 유형의 지주에 한국인지주가 많으며 이들은 주로 都市 등에 거주하면서 마름을 통해 관리하며, 후자 유형의 지주에는 일본인이 많다고 보았다(일제하 지주제의 유형론, 특히 동태적 지주의 역사적 기원, 그 성격, 지리적 분포 등에 대해서는 久間健一, 「朝鮮農政의 課題」 1943, 宮嶋博史(1982), 장시원(1989), 홍성찬(1989) 등을 참조). 한편 이러한 지주제 유형론은 일제하 지주제의 본질을 흐릴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기도 하였는데(장시원(1989)) 우리는 이 양자의 구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먼저 지주의 수입은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y = N <a F(L, A, Kt, Mt, Mt) + b>;$$

y=지주의 소득, N=토지분할수(즉 지주의 총소유면적은 NA가 된다), F=생산함수, L=노동, A=토지, K=물적 요소, M=경영적 요소 (하첨자 l은 지주, t는 소작농), a, b=분배방식을 나타내는 파라메터, 즉 $0 < a < 1$, $b = 0$: 정율제, $a = 0$, $b > 0$: 정액제, $a = 1$, $b < 0$: 직영제.

생산함수(F)에는 토지(A)와 노동(L) 외에 소작농의 물적(Kt) 및 인적자본(Mt)과 더불어, 지주가 가지고 있는 물적(Ki) 및 인적 자본(Mi)도 투입되고 있다. 위 식을 이용하여 지주의 유형을 구분하면, 동태적 지주는 $Kt > 0$, $Mt > 0$ 인 지주이며 정태적 지주는 $Kt = Mt = 0$ 인 지주가 된다(비료대부지주는 $Kt > 0$, $Mt = 0$ 인 지주이다), 특히 $Kt > 0$, $Mt > 0$ 이면서 $Kt = Mt = 0$ 이라면, 소작농은 오로지 노동력만 제공하는 '사실상의 노동자'에 불과하며 지주는 단순한 토지대부자가 아니라 물적·인적 자본을 제공하는 자본가겸 경영자가 된다. 요컨대 동태적 지주와 정태적 지주의 차이점은 지주가 생산과정에 물적·인적자본을 투입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표 2) 추정결과 : 自作地와 小作地의 比較

종속변수	상수	DRE	log A	log PL	DTE	R ²
노동	-0.32 (-0.17)	2.41* (4.02)	-0.35 (-0.91)	4.31* (5.51)	-0.29 (-0.51)	0.42
비료	-3.94 (-1.98)	3.34* (5.36)	0.16 (0.38)	3.24* (3.99)	0.78 (1.33)	0.43
고정자본	-0.36 (-0.70)	0.05 (0.33)	-0.06 (-0.54)	0.50** (2.42)	-0.05 (-0.32)	0.04
토지생산성	0.07 (0.19)	0.31** (2.59)	-0.04 (-0.54)	1.04* (6.69)	0.12 (1.06)	0.44

자료 : (표 1)과 같음.

여타 변수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자작·소작을 구별해 주는 가변수 DTE의 경우에만 주목해 보기로 하자. (표 2)에 따르면 노동과 고정자본의 부호는 (-), 비료는 (+) 그리고 토지생산성도 (+)이나 모두 비유의 적이다. 즉 이 결과만을 놓고 볼때는 고전적 가설을 기각하고 Cheung의 가설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생각될지 모른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작지에서 요소투입의 결정은 지주가 아니라 소작농에 의해 이루어지며 또한 같은 小作地라 하더라도 지주의 在村 유무에 따라 생산성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 경우에도 小作地를 在村地主와 不在地主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표 3)은 자작지와 재촌지주의 소작지간에 (표 4)는 자작지와 부재지주의 소작지간에 요소투입과 토지 생산성을 비교한 추정결과이다.

먼저 자작지와 재촌지주의 小作地를 비교한 (표 3)에 따르면 지주의 재촌유무를 나타내는 가변수 DTE의 경우 투입과 산출 모두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재촌지주와 자작지간에 유의미한 요소투입과 생산성의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작지를 부재지주의 소작지와 비교한 (표 4)에 따르면 投入에서는 양자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토지생산성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된다. 즉 在村地主의 소작지는 自作地와 유의적인 생산성 차이가 없으나 不在地主의 소작지는 自作地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要素投入量은 자작지, 부재지주의 소작지, 그리고 재촌지주의 소작지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작지에서 생산성 격차는 물적자본의 투입차이 보다는 지주의 인적자본 투입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표 3〉 추정결과: 自作地와 在村地主의 小作地 比較

종속변수	상수	DRE	log A	log PL	DTE	R ²
노동	-0.06 (-0.03)	2.62* (3.58)	-0.09 (-0.20)	4.27* (4.91)	-0.54 (-0.75)	0.45
비료	-3.17 (-1.61)	3.08* (4.46)	0.52 (1.18)	2.96* (3.61)	0.96 (1.27)	0.48
고정자본	-0.42 (-0.73)	-0.04 (-0.17)	-0.12 (-0.91)	0.47* (1.95)	0.13 (0.67)	0.03
토지생산성	0.15 (0.37)	0.29** (2.02)	0.08 (0.89)	1.10 (6.50)	-0.08 (-0.55)	0.49

자료: 〈표 1〉과 같음.

주: 1. DTE는 자작지=1, 재촌지주의 소작지=0을 나타내는 가변수

2. 조사농가수=60, 자작농=40, 재촌지주의 소작농=20.

〈표 4〉 추정결과: 自作地와 不在地主의 小作地 比較

종속변수	상수	DRE	log A	log PL	DTE	R ²
노동	0.55 (0.22)	2.47* (3.43)	-0.04 (-0.09)	3.91* (4.03)	-0.19 (-0.26)	0.35
비료	-5.93** (-2.30)	3.34* (4.49)	0.17 (0.36)	4.08* (4.08)	0.71 (0.95)	0.42
고정자본	-0.40 (-0.56)	-0.70 (-0.30)	-0.07 (-0.50)	0.60* (2.18)	-0.20 (-0.97)	0.03
토지생산성	-0.78 (-1.62)	0.48* (3.44)	-0.07 (-0.76)	1.28* (6.78)	0.32** (2.88)	0.52

자료: 〈표 1〉과 같음.

주: 1. DTE는 자작지=1, 부재지주의 소작지=0을 나타내는 가변수

2. 조사농가수=60, 자작농=40, 부재지주의 소작농=20.

3. 『農家經濟概況調查』의 추정결과

1) 畜 作

이번에는 『概況調查』를 이용하여 소작료율과 토지생산성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畜과 田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검정에 이용된 식은 다음과 같다.

$$Q = a + b RLI + c RATE + d RF + \sum e_i DRE_i$$

Q=段當 수확고(石), RLI= 解讀者비율(=‘彥文 以上 解讀者’數/‘노동 능력으로 환산한 가족수’), RATE=소작료율, RF=定額制비율, DREi=각 道를 구별해 주는 지역 가변수.

설명변수에는 소작료율(RENT) 외에 정조법비율(RF)과 '해독자비율'(RLI)을 포함시켰다. 해독자비율은 인적자본의 대변수로서 인적자본의 차이가 실제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포함시켰다. 추정은 남한, 북한 및 전국 등 세 가지로 나누어 하였다. 실제 추정에서는 도별 가변수를 포함시켰으나 추정치는 번거러움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였다.

〈표 5〉 추정결과: 토지생산성과 소작료율, 인적자본(畜作)

	1933			1938		
	남한	북한	전국	남한	북한	전국
상수	3.88 (7.63)	1.31 (0.80)	2.80 (4.73)	3.67 (7.02)	2.61 (5.89)	2.28 (9.68)
해독자비율	0.24 (1.87)	1.78 (3.49)	0.45 (2.89)	0.57 (2.39)	0.33 (0.63)	0.55 (2.18)
소작료율	-2.33 (-2.44)	-0.24 (-0.08)	-1.89 (-1.69)	-1.65 (-1.71)	-0.49 (-2.38)	-0.48 (-3.32)
정조법비율	-0.05 (-0.29)	-0.36 (-1.34)	-0.21 (-1.39)	0.01 (0.05)	-0.28 (-0.95)	-0.12 (-0.82)
N	118	89	207	118	89	207
R ²	0.13	0.17	0.13	0.15	0.10	0.19

자료: 朝鮮總督府 農林局 農村振興課,『農家經濟概況調查』(小作農剖), 1940.

주: N은 조사농가수.

〈표 5〉에 따르면 해독자비율(RLI)의 부호는 모두 (+)로서 북한의 1938년을 제외하고는 유의수준도 10%이내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해독자비율로 대변되는 人的 資本이 실제 미작생산성에 正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소작료율(RATE)의 부호는 모두 (-)로서 1933년 북한지방을 제외하고는 유의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미곡생산비조사」의 추정결과와 마찬가지로 지주는 소작노동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정액제비율(RF)의 부호는 1938년의 남한을 제외하고는 예상밖으로 (-)로 나타났으며 그나마 모두 비유의적이다.⁴⁶⁾ 즉 소작방법간에는 유의미

46) 일반적으로 정조법비율이 높을수록 소작료율이 낮은, '負의 관계'가 있으므로, 〈표 5〉의 결과는 多重共線性의 영향때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기재하지 않았지만, 설명변수에 소작료율을 빼고 정조법의 비율(RF)만을 넣고 회귀분석을 해보았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정조법의 비율과 토지생산성 간에는 유의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生產性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定額制가 定率制에 비해 생산성이 높을 것이라 일반적인 통념이 일제하에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가능성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일반적으로 정액소작제가 정율소작제에 비해 생산성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는 前者하에서 소작농의 耕作權이 後者보다 안정적이란 점에 있다. 거꾸로 말하면 비록 정액제라 하더라도 소작권이 불안정하다면 토지에 대해 애착심이 낮다는 점에서 정율제와 다를 바가 없다. 위의 결과는 이처럼 정액제와 정율제간에 소작권 안정의 차이라는 측면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이러한 가설은 다음과 같은 회귀식을 통해 검정할 수 있다. 회귀식은 종속변수에 小作農 移動率을, 독립변수에는 정액제 비율을 이용하였다. 소작농 이동률은 1929-30년동안 각도별 小作權 移動件數를 소작관련 농가호수로 나누어 구하였다⁴⁷⁾. 만일 소작농의 경작권이 정율소작제에 비해 정액소작제 하에서 보다 안정적이라면 양자간에는 負의 관계가 도출될 것이다. 추정결과는 아래 식에서 보듯이 유의수준 5%에서 負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제 정액소작제하에서의 경작권이 정율제하에서보다 대체로 안정적이다. 따라서 첫번째 가능성은 커다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text{소작농이동률} = 1.92* - 0.33** \text{ 정액제비율}, R^2 = 0.39$$

(4.55) (2.93)

두번째는 소작농에 대한 감독이 정액제에 비해 정율제하에서 보다 철저하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즉 앞의 II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율제하에서는 소작농의 懈業가능성이 보다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주 측에서 소작노동을 보다 엄격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朝鮮總督府편, 『朝鮮의 小作慣行』와 각 도에서 간행된 『小作慣行調査書』에는 각 郡별로 管理人數와 管理面積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면 소작방법과 지주의 管理強度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

47) 각 도별 소작농 이동건수와 소작관련 농가호수의 통계는 朝鮮總督府 農林局, 『朝鮮二於ケル 小作ニ關スル參考事項及摘要』, 1934, p.48, pp.107-108을 이용하였다.

다.⁴⁸⁾ 지주의 관리강도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먼저 지주가 부담하는 관리인수(NC)를 가려낸 다음⁴⁹⁾ 이를 管理面積(NA)으로 나누면 단위 면적 당 얼마나 많은 인원이 관리하는가 하는 일종의 관리 強度 – 이를 RCA (=NC/NA)라 하자 – 가 도출된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NC를 소속 소작인수(NT)로 나누면, 소작인 1명당 얼마나 많은 인원이 관리하는가 하는 또 다른 관리강도 – 이를 RCT라 하자 – 를 구할 수 있다. 前者가 토지 기준의 관리강도라면 後者는 사람 기준의 관리강도에 해당된다.

만일 정액제하에서의 관리강도가 정율제보다 낮다면 각 지역의 정액제비율(RF)과 관리강도(RCA혹은 RCT)간에는 負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추정 결과는 〈표 6〉에 정리하였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관리강도와 정액제의 비율간에는 (−)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주는 정액제보다는 정율제하에서 감독을 보다 철저하게 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율제가 정액제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이처럼 정율제하에서의 관리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는 가설은 설득력을 갖는다.

〈표 6〉 추정결과 : 소작방법과 관리 強度와의 관계

총속 변수	상수	관리 강도(1) (RCA)	관리 강도(2) (RCT)	R ²	N
RF	46.78*	−34.47*** (9.54)		0.52	47
RF	42.41 *		−68.37** (−2.52)	0.50	47

자료 : 관리강도는 함남, 강원, 충남, 충북편 각 『小作慣行調査書』, 1931에서 필자가 계산.

주 : 실제 추정에는 각 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여 가변수를 이용 하였으나 여기에서는 생략하였다.

세번째는 정율제의 장점인 통합(pooling)효과 때문일 가능성이다. 즉 앞

48) 소작결정의 모형에서 管理人數를 관리비용의 대변수로 활용한 연구로는 Alston, Datta and Nugent(1984)가 있다.

49) 관리인은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가에 따라, (1)地主가 부담하는 관리인數와 (2)小作人이 부담하는 관리인수, 그리고 (3)지주와 소작인이点半부담하는 관리인수로 분리되어 있다. 이 중에서 小作人이 부담하는 관리인수는, 지주의 '管理費用'의 개념에 들어가지 않으며, 또한 '点半' 부담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半'정도만 포함된다. 따라서 순수하게 지주가 부담하는 관리인수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지주 부담 관리인수=지주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관리인수 + 반반 부담하는 관리인수 * 1/2.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율제하에서는 정액제에는 없는 장점, 즉 소작농의 부존자원 외에 지주 자신의 부존 자원이 투입된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이 정율제의 단점인 과소투입을 상쇄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앞에서 在村地主와 不在地主를 비교하면서 그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2) 田作

다음에는 같은 방법으로 밭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추정결과는 <표 7>에서 보듯이, '해독자비율'은 모두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즉 밭의 경우 人的資本은 土地生產性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앞서 살펴본 米作의 경우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Welsh(1970)의 가설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에 따르면 人的資本이 농업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기술의 변화가 급격할수록 증대한다고 한다. 그런데 일제하 米作技術은 일본식 농법인 改良農法이 재래농법을 대체하면서 커다란 변화를 겪은 반면 밭작물은 棉作을 제외하고는 큰 변동이 없거나 심지어 생산력이 후퇴하였다.⁵⁰⁾ 위의 결과는 이러한 양 작물간의 기술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7> 추정결과 : 토지생산성과 소작료율, 인적자본 (田作)

	1933			1938		
	남한	북한	전국	남한	북한	전국
상수	2.24 (8.26)	0.53 (1.85)	1.18 (5.28)	2.97 (6.07)	0.78 (2.11)	1.61 (4.78)
해독자비율	0.10 (0.94)	-0.02 (-0.16)	0.08 (1.00)	-0.54 (-1.42)	0.00 (0.01)	-0.15 (-0.68)
지대율	-2.12 (3.59)	0.31 (0.60)	-1.10 (-2.73)	-2.56 (-2.70)	0.37 (0.59)	-0.93 (-1.67)
정액제비율	0.07 (0.41)	-0.05 (-0.54)	-0.04 (-0.45)	0.08 (0.27)	-0.06 (-0.41)	-0.15 (-1.05)
N	116	95	211	115	94	209
R2	0.28	0.08	0.59	0.17	-0.04	0.39

자료 : <표 5>와 같음.

주 : N=조사농가수

50) 일제하 旱作의 生產性 停滯에 대해서는 이호철(1992)를 참조.

다음으로 지대율(RATE)의 경우를 보면, 북한지방을 제외하고는 남한과 전국의 경우는 예상대로 (−)이며 유의수준 또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일반적으로 밭작물의 경우는 정조법 비율이 높아 소작료율과 토지생산성간에 ‘負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定租法 비율(RF) 역시 米作과 마찬가지로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IV. 맺음말

일찌기 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은 定率小作制의 존속을 농업발전의 주된 장애물로 생각하였다. 自作制나 定額小作制와 달리 정율소작제에서는 要素가 과소투입되기 때문에 非效率的이란 이유에서였다. 1960년대 들어와 이러한 ‘전통적 가설’에 대해 많은 이론적·실증적 反論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반론에 따르면 지주는 소작 노동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으며, 따라서 지주가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한, 정율제는 자작제나 정액소작제에 비해 결코 비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많은 실증결과들에 의해 지지받음으로서 보다 설득력 있는 가설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증결과들의 대부분은 자작지와 소작지의 생산성을 단순 비교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경작규모와 토지의 질 특히 지주의 재촌유무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서구에서의 논의를 염두에 두면서 일제하 몇몇 농가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小作制의 효율성문제를 실증적으로 검토해보았다.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논밭을 불문하고 요소투입과 토지생산성은 소작료율과 負의 관계가 있었다. 즉 요소투입량의 결정은 소작농에 의해 이루어지며 지주는 소작노동을 적절히 감독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小作地를 지주의 在村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自作地와 단순 비교한 결과, 서구의 많은 실증결과와 마찬가지로 兩者간에는 요소 투입량과 토지생산성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소작지를 在村地主와 不在地主로 구분한 결과, 재촌지주의 소작지와 자작지간에는 유의미한 생산성 격차가 없었으나 부재지주의 소작지는 자작지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같은 소작지라 하더라도 지주의 재촌유무에 따라 생산

성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물적 요소투입량은 三者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로 미루어 보건대 이러한 사실은 소작지의 토지생산성은 지주의 물적 자본 외에도 인적자본 투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밭작과 달리 미작의 경우 인적자본이 토지생산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이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추론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 보다 염밀한 검토가 요망된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통설과 달리 정액소작제와 정율소작제간에는 유의미한 생산성격차가 발견되지 않은 점도 부언해둘 필요가 있겠다.

이상의 일제시기를 대상으로 한 본고의 추정결과가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소작제를 자작제와 대비하여 일률적으로 효율적 혹은 비효율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생산성을 비교할 때는 自作地나 小作地나의 구별외에 地主의 在村有無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물적 요소 외에 지주의 농사참여, 품종 및 비료의 선정 등 지주의 인적자본 투입도 토지생산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소작지의 생산성을 검토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이 일제는 한국인 지주를 動態的 地主(=在村地主)와 靜態的 地主(=不在地主)로 구분한 다음 강점기간 내내 정태적 지주를 동태적지주로 전환시키는 이른바 ‘지주의 동태화’를 꾸준히 시도해왔다.⁵¹⁾ 強占 末期에는 침략전쟁에 광분하여 급기야 不在地主의 農村復歸를 강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⁵²⁾ 일제의 농정을 한마디로 地主農政이라 규정한다면 지주농정의 핵심은 바로 부재지주의 동태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일제가 한국인 지주를 집요하게 동태화시키려고 한 것은, 비록 소작지라 하더라도 지주의 농사참여 여하에 따라 소작지생산성은 크게 증대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51) 이에 대해서는 久間健一, 앞의 책을 참조.

52) 強占 末期 일제의 농업정책의 내용과 본질에 대해서는 정연태(1992), 전강수(1993) 참조.

參 考 文 獻

1. 자료

1. 「米穀生産費調査」(大正15年度), 朝鮮總督府, 『朝鮮の小作慣習』, 1928.
2. 朝鮮總督府 各道 農務課, 『小作慣行調査書』(忠南, 忠北, 咸南, 江原篇), 1931.
3. 朝鮮總督府 農林局, 『朝鮮ニ於ケル小作ニ關スル参考事項及摘要』, 1934,
4. ————, 農村振興課, 『農家經濟概況調査 昭和8年—昭和13年 (小作農剖)』, 1940.

2. 논문 및 저서

1. 禹大亨, 『日帝下「改良農法」의 普及과 農村構造의 變化』(연세대 경제학 박사 학위논문), 1994
2. 李鎬澈, 『植民地時代 農業生產力의 構造와 旱田農法』, 『농업경제사』, 경북대출판부, 1992.
3. 田剛秀, 『植民地 朝鮮의 米穀政策에 關한 연구』(서울대 경제학박사 학위논문), 1993.
4. 張矢遠, 『日帝下 大地主制의 存在形態에 關한 연구』(서울대 경제학박사 학위논문), 1989.
5. 鄭然泰, 『1940년대 前半 日帝의 韓國農業再編策—‘農業再編成政策’을 中심으로』, 『國史館論叢』38, 1992.
6. 許宗浩, 『朝鮮封建末期小作制研究』, 한마당, 1965.
7. 洪性讚, 『일제하 企業家的 農場型 地主制의 역사적 성격』, 『동방학지』63, 1989.
8. 宮嶋博史, 『植民地下朝鮮人大地主の存在形態に關する研究』, 『朝鮮史叢』5·6 合併號, 1982.
9. Alston, Datta and Nugent, “Tenancy Choice in a Competitive Framework with Transaction Cos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2, 1984, pp. 1121–33.
10. Bardhan, P. and Srinivasan, “Cropsharing Tenancy in Agriculture:

-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aysis”, *American Economic Review* 61, 1971, pp. 48–64.
11. Bell, C., “Some Tests of Alternative Theories of Sharecropping Using Evidence from Northeast India”,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13, 1977, pp. 317–46.
 12. Berry, R. and Cline, W., *Agrarian Structure and Productivity in Developing Countireis*, 1979,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 Press.
 13. Binswanger, and Rorenzweig, “Contractual Arrangements, Employment and Wages in Rural Labor Markets: a Critical Reveiw”, in Binswanger, H.. and Rosenzweig, M. eds., *Contractual Arrangements, Employment and Wages in Rural Wage Market: A Critical Review*, 1981, New York: Agricultural Development Council.
 14. Byres, J., “Sharecropping in Historical Perspectives” in Byres, J. eds. *Sharecropping and Sharecroppers*, 1983, London: Cass.
 15. Cheung, S., “Private Property Rights, and Sharecropp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6, 1968, pp. 1107–22.
 16. ———, *The Theory of Tenancy*, 1969, Chicago: Univ of Chicago.
 17. Eswaran, M. and Kotwal, A., “A Theory of Contractual Structure in Agriculture”, *American Economic Review* 75, 1985, pp. 352–67.
 18. Fama, E., “Agency Problems and the Theory of the Fir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0, 1970, pp. 288–307.
 19. Feder and Zilberman, “Adoption of Agricultural Innovations in Developing Countries: A Survey”,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33, 1985, pp. 255–98.
 20. Holmstrom, B., “Moral Hazard in Teams”, *Bell Journal of Economics* 13, 1982, pp. 324–40.

21. Huang, Y., "Tenancy Patterns, Productivity, and Rentals in Malaysi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23, 1975, pp. 703–18.
22. Hsiao, J., "The Theory of Share Tenancy Revisit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3, 1975, pp. 1023–32.
23. Johnson, D., "Resource Allocation under Share Contrac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8, 1950, pp. 111–23.
24. Koo, A., "Towards a More General Model of Land Tenancy and Reform",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87, 1973, pp. 567–80.
25. Kotwal, A., "The Role of Consumption Credit in Agricultural Tenancy",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8, 1985, pp. 273 –295.
26. Lambert, R., "Long Term Contracts and Moral Hazard", *Bell Journal of Economics* 14, 1983, pp. 441–452.
27. Lemann, D., "Sharecropping and the Capitalist Transition in Agriculture: Some Evidence from the Highlands of Ecuador",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23, 1986, pp. 333–354.
28. Mookherjee, D., "Optimal Incentive Schemes with Many Agents," *Review of Economic Studies* 51, 1984, pp. 433–46.
29. Morooka, Y and Hayami, Y., "Contract Choice and Enforcement in an Agrarian Community: Agricultural Tenancy in Upland Java, *Journal of Economic Studies* 26, 1989, pp. 28–42.
30. Otsuka, Kikuchi and Hayami, "Community and Markets in Contract Choice: The Jeepney in the Philippine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34, 1986, pp. 279–98.
31. ——— and Hayami, "Theories of Share Tenancy: A Critical Survey",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37, 1988, pp. 31–68.
32. ———, Chuma and Hayami,, "Land and Labor Contracts in Agrarian Economies: Theories and Facts", *Journal of Economic Lit-*

- erature 30, 1991, pp. 1965–2018.
33. Pearce, “Shrecropping: Towards a Marxist View” in Byres, T.J. eds. (1983).
34. Quibria and Rashid, “A Puzzle of Sharecropping: A Survey of Theories”, *World Development* 12, 1984, pp. 103–14.
35. _____ and _____, “Sharecropping in Dual Agrarian Economies: A Synthesis”, *Oxford Economic Papers* 38, 1986, pp. 94–111.
36. Reid, J., “The Theory of Share Tenancy Revisited—Agai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 1977, pp. 403–47.
37. Roumasset, J., *Rice and Risk: Decision Making among Low-Income Farmers*, 1976, Amsterdam:North–Holand Press.
38. Shaban, R., “Testing between Competing Models of Sharecropping”,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 1986, pp. 893–920.
39. Stiglitz, J., “Sharecropping”, *Discussion Paper* No.1, 1988, Princeton Univ.
40. Taslim, M., “Allocative Efficiency of Cropshare Cultivation: Interpreting the Empirical Evidence”, *The Pakistan Economic Development Review* 28, 1989, pp. 233–50.
41. Truran, A. and Fox, R., “Resource Productivity of Land Owners and Sharecroppers in the Carri Region of Brazil”, *Land Economics* 55, 1979, pp. 93–107.
42. Welsh, F., “Education in Produc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 1970, pp. 39–59.